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콘텐츠에서는 반려동물의 입양, 동물등록, 사육 준수사항, 외출 준비, 대중교통 이용, 학대 신고 및 장례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1
1. 반려동물 (개·고양이) 데려오기	4
1.1. 반려견·반려묘 입양 및 등록	4
1.1.1.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어요.	4
1.1.2. 반려견은 등록대상 동물입니다.	7
2. 반려동물 (개·고양이) 과 생활하기	11
2.1. 반려견·반려묘 돌보기	11
2.1.1. 반려동물,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11
2.2.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외출하기	13
2.2.1. 반려견과 외출 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13
2.2.2.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17
3. 반려동물 (개·고양이) 보호하기	20
3.1. 반려견·반려묘 유기 및 학대 금지	20
3.1.1. 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	20
4. 반려동물 (개·고양이) 장례 치르기	24
4.1. 반려견·반려묘와 작별 준비하기	24
4.1.1.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

1. 반려동물 (개·고양이) 데려오기

1.1. 반려견·반려묘 입양 및 등록

1.1.1.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어요.

※ 이 콘텐츠에서는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로 범위를 한정하여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반려견·반려묘 입양 전에 확인해보세요.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반려견·반려묘 입양 전 체크리스트
•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인연을 맺은 동물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습니까?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실천할 생각입니까? •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입양안내참조]

반려견·반려묘는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란?

동물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거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해 위탁하여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참조).

동물보호센터에서 누구나 입양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이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3조).

유실이나 유기 등으로 보호조치한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보호비용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다만,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제1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반려묘는 허가받은 동물판매업자에게 입양 받으세요.

허가받은 동물판매업자란?

「동물보호법」은 건강한 반려동물을 유통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영업자만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3항 참조).

※ 동물판매업 허가 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판매업 허가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별표 12 제1호가목 참조).

이를 위반해서 동물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9호 참조).

반려견·반려묘 입양 시에는 계약서를 챙기세요.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함)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다목 참조).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3.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4.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5. 예방접종, 약물 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6.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명서류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8.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
9.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찾기 쉬운 생활법령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입양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2호 ⑮번 참조).

[반려견·반려묘 입양 후 발생한 피해 배상]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구입 한 반려견·반려묘가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2호 ⑮번 참조)

※ 반려견 미용 서비스 관련 분쟁

Q. 반려견 미용 서비스 중 상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 A.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과실이 존재할 경우, ②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경우, ③가해자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일 경우, ④모든 과정에 있어 인과관계가 증명될 경우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려견이 미용시술을 받던 중 다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에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 반려견 주인이 그 사실을 입증(치료비 영수증 제출 등)하고, 미용 서비스업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그 책임능력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려견은 「민법」 제98조에 따라 물건에 해당하므로 미용서비스업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반려견 주인의 자산에 손실을 가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려견이 미용 서비스를 받던 중 상처를 입어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www.kca.go.kr)-분쟁조정결정사례 참조]

※ 반려견·반려묘 입양 시 전달 방법

Q.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전달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A.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구매 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직접 전달받아 데려오거나,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운송업체를 통해 전달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01조제3항제3호 참조)

※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 운송 시 준수 사항

-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물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운송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제101조제3항제2호)

1.1.2. 반려견은 등록대상 동물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 반려견 알아보기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인 단독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포함함)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단독주택은 제외함)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다만, 개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법률 용어>

-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호).
 -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 기숙사
 - 다중생활시설
 -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

반려견 등록하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본문).

찾기 쉬운 생활법령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동물생산업자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함)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본문).

도서(島嶼) [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대상동물을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단서).

이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호).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알아보기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 등 대행업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동물등록대행자를 말함)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별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 참조).

※ 동물등록대행 과정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참조).

※ 동물등록(신규 신고) 수수료는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은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은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입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6조 전단 및 별표 14 제1호가목 참조).

동물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참조).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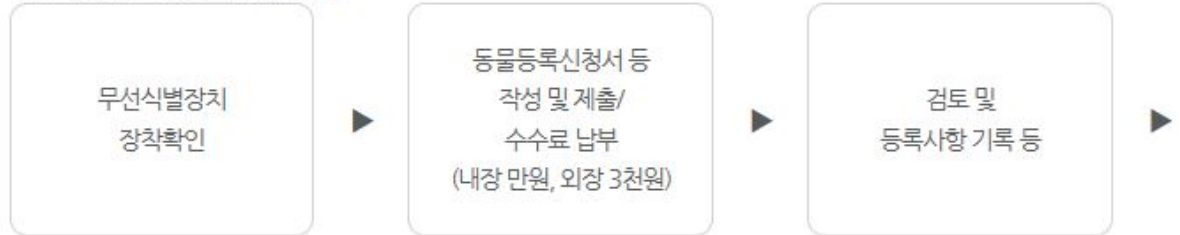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판매업자

※ 반려견 등록 절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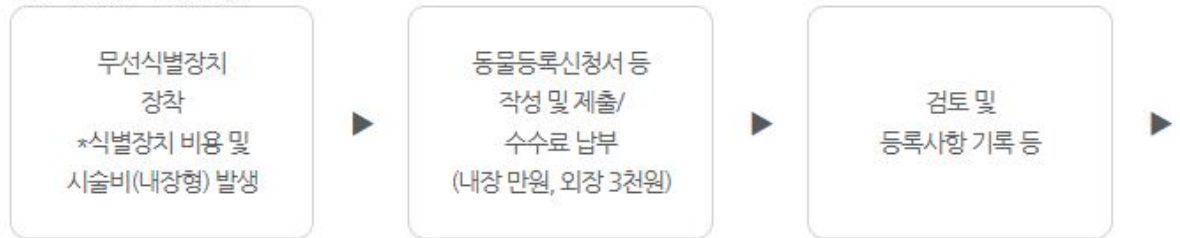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에서 등록을 원할 경우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등록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행업체 (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에서 등록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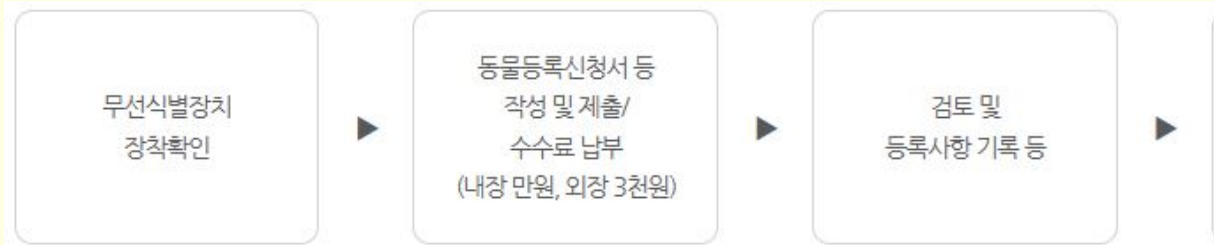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등록할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www.animal.go.kr) (www.animal.go.kr) - 동물등록참조]

※ 반려묘 동물등록

Q. 반려묘를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같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반려묘의 경우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2022년 2월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반려묘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보도자료 (2022. 1. 27.)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참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www.animal.go.kr) (www.animal.go.kr) - 동물등록을 이용하시면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대행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 정보 변경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경우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1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반려견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1호).

※ 동물등록증 재발급

Q.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전단 참조)

2. 반려동물 (개·고양이) 과 생활하기

2.1. 반려견·반려묘 돌보기

2.1.1. 반려동물,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반려견·반려묘 보호를 위해 사육·관리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알아보기

소유자등은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9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참조).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 보장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노력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노력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

그 밖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항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반려견·반려묘의 사육공간·위생 관리 등 기준을 준수해 주세요.

반려동물 돌봄의무 준수 사항 알아보기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의무로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및 별표 2).

1.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2.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3.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것
- 가.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함)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
- 나.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4.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5.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함)으로 하되,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을 것

6.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을 것
7. 동물에게 질병(굴절 등 상해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8.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9.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동물이 그 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10.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11. 먹이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12.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13. 동물의 사육공간이 소유자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할 것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3호).

반려견·반려묘 예방접종하기

반려견 예방접종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www.animal.go.kr)(www.animal.go.kr)-건강정보 참조].

혼합예방주사	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2 ~ 4회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	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1 ~ 2회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기관·기관지염	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1 ~ 2회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광견병	기초접종 : 생후 3개월 이상 1회 접종
	보강접종 : 6개월 간격으로 주사

반려묘 예방접종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www.animal.go.kr)(www.animal.go.kr)-건강정보 참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혼합예방주사	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2 ~ 3회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고양이 백혈병	기초접종 : 생후 9 ~ 11주에 1차 접종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1 ~ 2회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전염성 복막염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3주 간격으로 1회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광견병	기초접종 : 생후 3개월 이상 1회 접종
	보강접종 : 1개월 간격으로 주사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http://www.animal.go.kr) -건강정보를 이용하시면 반려동물 식사관리 및 질병관리 등 건강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외출하기

2.2.1. 반려견과 외출 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별외출 시에는 목줄(가슴줄)·인식표 및 배변봉투를 준비해 주세요.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4호).

반려견 인식표 부착하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려견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및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이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5호).

반려견 배설물 수거하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

이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6호).

※ 반려동물과 정부 지정 자연공원 이용하기

- 반려동물과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과 같은 정부 지정 자연공원에 갈 때는 미리 가려는 장소의 공원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려동물의 출입 가능 여부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공원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입장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함]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제86조제1항제6호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 참조)

반려견이 맹견이라면?

나의 반려견이 맹견일까?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개의 기질평가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맹견 알아보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분야별정보-환경-동물복지-반려견 기질평가 p.2 참조]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면 먼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하는 사람 포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에게 기질평가 및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5항).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것

「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 다만,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시·도지사가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4항).

맹견의 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참조).

신규교육: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을 것

※ 다만, 해당 기간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을 것

맹견의 사육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3항제1호, 제97조제5항제6호 및 제101조제2항제3호).

찾기 쉬운 생활법령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맹견이 아닌 개의 경우 기질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Q. 맹견만 기질평가의 대상이 되나요?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높은 견종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A. 맹견이 아닌 개여도 공격성이 높다면 기질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해당 개가 훈련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4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참조)

맹견 소유자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장치와 이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이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는 곳에 맹견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할 것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갖출 것

다음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할 것

- √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 √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 √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그 밖에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방지를 위해 시·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위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3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5호).

맹견 출입 금지 지역이 있습니다.

맹견의 소유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4호).

※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Q. 맹견 소유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A.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및 101조제2항제3호 참조)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가운전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경우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참조).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며, 범칙금(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33호 참조).

시내버스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반려동물의 시내버스 탑승 가능 여부는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허용종량 및 용적규격을 초과하지 않고 반려동물 전용 운반상자를 갖춘 경우에는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시내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제3호 및 제17조 참조].

※ 장애인 보조건의 대중교통 탑승

Q. 반려동물과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하려면 전용 운반상자 넣어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다고 하던데요. 장애인 보조건의 경우에도 다른 반려동물과 같이 동일하게 탑승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 누구든지 보조건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건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함). 만약 보조건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전단 및 제90조제3항제3호 참조)

고속버스·시외버스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반려동물의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 탑승 가능 여부는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허용종량 및 용적규격을 초과하지 않고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3조, 제25조제3호 및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2조제3호 참조).

전철(광역철도·도시철도)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반려동물과 함께 전철에 탑승하려면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탑승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도시철도법」 제32조,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 및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5조제1항제4호 참조).

기차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반려동물과 함께 기차에 탑승하려면 ① 반려동물(이동장비를 포함)의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반려동물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제2호 참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함께 기차에 탑승하여 탑승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기차에서 퇴거 조치를 받거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참조).

비행기

탑승 가능 여부 및 수하물 서비스 문의하기

반려동물의 비행기 탑승 가능 여부는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해당 항공사에 연락해서 미리 상담한 후 반려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업법」 제62조제1항 참조).

※ 반려견 또는 반려묘와 해외여행을 위한 검역절차 관련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www.qia.go.kr) -동물방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교통수단

택시

반려동물의 택시 탑승 가능 여부는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 또는 영업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참조).

연안여객선

반려동물의 연안여객선 탑승 가능 여부는 연안여객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연안여객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운법」 제11조의2 참조).

화물자동차

반려동물과 위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인 경우에는 밴형 화물자동차에 반려동물과 동승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참조).

3. 반려동물 (개·고양이) 보호하기

3.1. 반려견·반려묘 유기 및 학대 금지

3.1.1. 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

반려견·반려묘를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개와 고양이 유기(遺棄) 금지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1호 참조).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버린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1호).

만약, 반려동물 중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2호).

※ 동물 습득 시 신고

Q. 거리에서 주인을 잃고 방황하는 강아지를 발견해 주인을 찾아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버리지거나 (유기된) 주인을 잃은 (유실된)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서 등에 습득한 동물을 맡겨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제2호, 「유실물법」 제1조제1항, 제12조 및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1항 참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반려동물 분실·구조-반려동물 분실신고를 이용하시면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및 신고 된 등록동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육 포기 (지자체 인수제)

Q.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려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물인수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제4항 참조)

반려견·반려묘를 학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학대입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

개와 고양이 학대 금지

1.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다음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나.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다.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2.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항·제4항).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나.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동물실험인 경우

다.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나.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동물실험인 경우

다.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소싸움 등 민속경기 등은 제외함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누구든지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3항).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위의 1. 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1호).

위의 2. 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위의 3. 사항 중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2호).

위의 3. 사항 중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가.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나.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다.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동물보호법」 제99조).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로부터 학대 또는 적정한 관리를 받지 못해 보호조치 중인 경우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1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참조).

학대자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함)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0조제1항 참조).

※ 동물 학대 신고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

Q. 학대받는 강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제1호 참조)

4. 반려동물 (개·고양이) 장례 치르기

4.1. 반려견·반려묘와 작별 준비하기

4.1.1.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견·반려묘 올바른 사체 처리 방법은?

사체 처리 방법 알아보기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사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위탁)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별표 2 제2호가목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참조).

(종량제 봉투에 배출)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항·제5항 참조).

(동물장묘 시설 이용)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4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호나목·다목·라목 참조).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체 투기 금지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이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별표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참조).

사체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 참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반려견·반려묘 장례 등 치르기

동물장묘시설 선택하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

동물장묘업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참조)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영업자-동물장묘업에서 동물장묘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말소신고하기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8호 참조) .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1호)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등록변경 신고하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등록된 동물에 대한 말소신고 (사망 신고)를 하거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말소신고할 수 있습니다.